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6
----------	-----

발의연월일 : 2010. 1. 25.

발 의 자 : 박희경·김성숙 의원
(찬성자 9인)

제안이유

- 가. 수도물 수질기준은 점차 강화 되어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하여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에도 수도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음용률은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 나. 우리 시 미추홀 참물의 수질향상과 수도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사회단체 및 시민 등이 함께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시행시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1조의2)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41조의2(음용물 향상과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물 향상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법령</p>	<p>□ 수도법</p> <p>제33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 수도법 시행령</p> <p>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p> <p>□ 주택법</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9.2.3>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3></p>
-------------	---